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조사회 및 헌법 심사회

위원회에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참의원에는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의원에는 다음과 같은 17개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 내각 위원회 2) 총무 위원회 3) 법무 위원회 4) 외교 방위 위원회 5) 재정 금융 위원회
- 6) 문교 과학 위원회 7) 후생 노동 위원회 8) 농림 수산 위원회 9) 경제 산업 위원회
- 10) 국토 교통 위원회 11) 환경 위원회 12) 국가 기본 정책 위원회 13) 예산 위원회
- 14) 결산 위원회 15) 행정 감시 위원회 16) 의원 운영 위원회 17) 징벌 위원회

의원은 적어도 하나의 상임 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별 위원회는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중참 양원의 각 본회의에서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회는 참의원 특유의 조사 기관이며 통상 선거 후에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회는 기본 사항에 관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지만 법률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와 조사회의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수를 근거로 하여 비례배분됩니다. 각 정당이 제각기 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의장이 각 정당이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또한, 헌법 개정 원안이나 헌법 개정 절차 법안 등의 심사는 헌법 심사회에서 합니다.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반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심의 사항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보도 기자 등 (일반인을 포함)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예산, 조약, 법률안 등의 의안 및 청원을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 심의를 하는 기관이므로 각 위원회는 저마다 소관 분야의 안건을 전문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상세하게 심사합니다. 그 밖에 각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중 특색이 있는 것으로 국가 기본 정책 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중의원의 같은 명칭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당수 토론’을 실시하는데 이는 내각총리대신을 초청해서 야당 당수와 토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법률 제정이나 정부의 행정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참 양원은 각각 국가 차원의 정치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들 조사는 위원회가 실시하는데, 조사 방법은 정부 및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여 정부에 질문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을 요구하기도 하며 현지에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에 입각해서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청원

중참 양원은 각각 청원을 접수합니다.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원의 소개로 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청원은 우선 관계 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내용이 타당한 청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각에 송부되어 내각에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내각은 매년 중참 양원에 청원의 처리 경과를 보고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계

국회의 의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참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참의원에 송부되어 참의원도 가결하면 법률로 성립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참의원에서 중의원이 낸 법안을 수정했을 때는 그것을 중의원에 되돌려 보내 중의원이 다시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률로서 성립됩니다.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양원 협의회’를 열어 양원의 의견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산, 조약, 법률안 및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해 중참 양원의 의사에 차이가 있을 때는 헌법이 정한 조건 하에서 중의원은 참의원에 비해 우월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률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후에 참의원에 보내졌는데 참의원이 이 법률안을 부결하여 이를 중의원에 되돌릴 경우, 중의원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면 그 법률은 성립하게 됩니다. 예산, 조약, 내각 총리대신의 지명에 관해서는 양원협의회를 열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참의원이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 의결로 됩니다. 또한 예산안은 중의원이 먼저 심의합니다.

참의원의 긴급 집회(긴급 소집)

중의원이 해산됐을 때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하여 국회는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러나 중의원이 해산되고 나서 총선거가 끝나 특별국회가 소집될 때까지의 기간에 국가에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는 내각은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의원의 긴급 집회 기능은 국회 기능의 잠정적인 대행에 한정됩니다. 만약 다음 국회가 소집된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긴급 집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 집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실효됩니다. 지금까지 참의원의 긴급 집회가 열린 것은 두 번에 불과합니다.

재판관에 대한 탄핵

국회에는 재판관을 탄핵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에 대해서 파면 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재판관 소추 위원회, 또 하나는 파면 소송이 제기된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을 행하는 기관——재판관 탄핵 재판소입니다. 이 두 기관의 구성원은 모두 중참 양원의 의원이 담당합니다.

사무국 및 법제국

각종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참 양원에는 각각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장 밑에서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도 그 중 한 부문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하여 중참 양원에는 각각 법제국도 설치되어 있습니다.